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

지난 1월 13일(금) 수의대의 정원을 조절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주관부서인 농림부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아래)이 공포되었다.

제28조 제3항 제2호 “라목”이 신설됨에 따라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 등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의학과의 정원을 조절(신설 등)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소관부처인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변경되었다.

- 아 래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 발체) 대통령령 제19278호

### 제28조 (학생의 정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 다.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
  -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01.1.29>

※ 제29조등을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시행함 